

제306회 임시회
2012. 1 . 12(목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
운영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나시찬

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월 03일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1월 04일

3. 제안이유

-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·도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가.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등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나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, 제7조)
- 다. 위촉위원의 임기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, 제8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충청북도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심의 및 기본계획,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-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- 입법예고(2011.11.10 ~ 11.29)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음.

□ 교통안전법

제13조(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시·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도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시·도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시·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(이하 "지역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- 조문의 내용은 「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시도별 조례제정 현황

시도별	조례명	제정일자
서울	「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」	2011-07-28
부산	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	2008-12-31
대구	대구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	2008-09-10
인천	인천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09-10-05
광주	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	2009-03-02
대전	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	2008-12-26
경기	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09-12-31
강원	강원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09-08-07
충남	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0-06-30
전북	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09-03-06
경북	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	2009-07-23
경남	경상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	2009-03-26

6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,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